

스칼라요양원 운영규정 제13장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5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2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같음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등급외 입소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입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5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

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상급병실료 (일 4,000원 * 30일) =120,000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025년 스칼라요양원 입소비용 안내 (30일기준/23수가)

등급	월한도액 (30일기준)	구분	자부담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식비,간식비)	기본 (30일기준)	상급침실 이용료(한달)	합계(30일기준)
1등급	2,713,500원 (90,450원*30일)	일반인	542,700원	378,000원	920,700원	120,000원	1,040,700원
		의료수급권자 (12%)	325,620원	378,000원	703,620원	120,000원	823,620원
		의료수급권자 (8%)	217,080원	378,000원	595,080원	120,000원	715,080원
		국민기초 수급권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2등급	2,517,300원 (83,910원*30일)	일반인	503,460	378,000원	881,460원	120,000원	1,001,460원
		의료수급권자 (12%)	302,076	378,000원	680,076원	120,000원	800,076원
		의료수급권자 (8%)	201,384	378,000원	579,384원	120,000원	699,384원
		국민기초 수급권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3,4,5 등급	2,377,200원 (79,240원*30일)	일반인	475,440	378,000원	853,440원	120,000원	973,440원
		의료수급권자 (12%)	285,264	378,000원	663,264원	120,000원	783,264원
		의료수급권자 (8%)	190,176	378,000원	568,176원	120,000원	688,176원
		국민기초 수급권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 주 1. 비급여 항목 참조, 현재 식비만 적용, 향후 유료 항목 추가시 변경요금 적용

2. 일반인 법정본인부담 : 월 한도액의 20%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본인부담 : 월 한도액의 8%, 12%

4. 국민기초수급권자 : 비급여(식비,간식비,간염검사비) 무료

: (기타생활용품, 상급병신포) 본인부담

* 등외입소 : 1일 60,000원(상급침실료 1일 4,000원/식비 및 간식비 별도)

※ 비급여 항목(30일 기준)

NO	항목	서비스내용	단가	월비용	비고
1	식비	1식 3찬	3,800원/90식	342,000원	30일×11,400원
2	간식비	1일 1회	1,200원	36,000원	30일×1,200원
3	이·미용비	월 1회	무료(전문자원 봉사자)		
4	계약의 진료비	월 2회	개인별 상이		
5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필요시	개인별 상이		
6	상급침실료	30일 = 120,000원			
7	기타생활용품 및 서비스	기저귀 무료 제공-팬티형 제외 (기타생활용품 본인부담)			필요시 보호자 직접구매 (월 치어, 위커, 욕창방지매트리스 등)

필요시 보호자 직접구매
(월 치매, 위커,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제55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 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5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